

장애등급제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9-76
----------	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제안 이유

「장애인복지법」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2019. 7. 1.부터 기존 “장애등급”을 폐지하고 “장애정도”로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되어있는 장애등급 표현을 제때에 개정·시행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“장애등급”을 인용하고 있는 용어 일괄정비(안 제1조~제6조)

1) 6개 조례

2) 개정유형

가) 장애등급 ⇒ 장애정도

나)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,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 ⇒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부서 합의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19. 5. 8.~5. 28.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장애등급제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(「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」의 개정) 「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장애등급”을 “장애정도”로 한다.

제2조(「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「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호 중 “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”을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”으로 개정한다.

제3조(「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「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장애등급 3급 이상인”을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「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5호 중 “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(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)”을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이들을)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」의 개정) 「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중 “등급”을 “장애정도”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 중 “장애등급”을 “장애정도”

로 한다.

1.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: 150만원
2.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: 100만원

제6조(「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」의 개정) 「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
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2를 삭제한다.

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부 칙

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